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62조 규정에 의거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화 성 시 장

1. 모집인원 : 〇명

2. 모집분야 및 임기

가. 모집분야

○ 도시계획, 경관, 토목, 건축, 환경, 방재

나.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2024. 12. 31.까지)

※ 시 조례 개정 시 임기 변동될 수 있음

3. 주요 심의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4. 자격요건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다른 위원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원으로 5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은 자(다만, 공동위원회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매주 수요일)할 수 있는 자

○ 자격요건의 기준은 모집공고일전으로 한다

<도시계획 분야>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관련학과(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행정학과 등) 조교수급 이상
 -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상 국토정책/계획분야에 박사학위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건설(도시)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건설(도시)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 근거

<기타 분야>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 모집분야 박사학위(취득신고 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5.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

나. 선정기준

- 해당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사람
- 여성위원, 관내 거주자 1년 이상 가점 부여
- 제한(감점)사항
 - 공고일 현재 타 도시계획위원회 중복 위촉
 - 공고일 현재 화성시 관내 현업 종사자

6.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 지원서 1부.

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1부

※ 공개모집 지원서 : 붙임 참조(일간지 공고문의 경우 화성시 홈페이지 참조)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된 것에 한하며, 자격, 경력, 저서, 논문, 연구수행 실적사항은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7.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2. 11. 4. ~ 2022. 11. 18. (14일간)

나. 접수처 : 화성시청 도시디자인과(우 18274, 화성시 시청로 159)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메일접수(ryvlf406@korea.kr)

※ 우편 및 이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대상자 선정통지 : 적격자 심사 선정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지

9. 기타 참고사항

가.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 부족한 위원수만큼 추후 추천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어 위원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분야별 지원자가 없거나 부족하여 위원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나. 우편접수 및 메일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시청에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 참석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심의)수당을 지급합니다.

라.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소정 양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도시디자인과(☎031-5189-67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